

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군세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세무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우편송달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구분(안 제2조, 제8조, 제9조)
- 나. 징수순위에 보통세와 목적세 순위 추가(안 제12조)
- 다. 지방세 체납시 허가 등의 제한시 사전통기한 설정(안 제14조)
- 라. 교부금전 공탁조항 삭제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
 - 1) 입법예고(2014. 8. 1. ~ 2014. 8.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보통우편 송달부)”를 “(일반우편 송달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전단 중 “보통우편”을 각각 “일반우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후단 중 “우편물접수인”을 “통신날짜도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하여야 한다.”를 “하고, 도세나 군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허가 등의 제한)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1항제2호 중 “내”를 “내의 경우에 한한다.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본문 중 “공탁하거나 또는 평창군(이하“군”이라 한다)”을 “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군세의 수납)”을 “(세무공무원의 수납)”으로 한다.

제38조 제2호 중 “같은 조 제5항”을 “영 제86조 제1항”으로 한다.,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우편”이란 「우편법」에 따른 <u>보통우편</u> 및 등기우편(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 <u>일반우편</u> ----- ----- --.</p>
<p>제8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<u>부과고지</u>하는 군세 중 1매당 세액이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<u>보통우편</u>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(생 략)</p> <p>⑤ (생 략)</p>	<p>제8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일반우편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<u>보통우편 송달부</u>) <u>보통우편</u>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<u>보통우편</u>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<u>우편물접수인</u>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<u>일반우편 송달부</u>) <u>일반우편</u> ----- ----- <u>일반우편</u> ----- -----. ----- <u>통신날짜도장</u>----- -----.</p>

제12조(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)
지방세는 도세, 군세의 순서로
징수하여야 한다.

제14조(허가 등의 제한) 법 제65
조에 따라 군수가 주무관청에
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
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
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
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
한다.

제15조(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
제공)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

제12조(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)

----하고, 도세나 군세 중에서
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
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
여야 한다.

제14조(허가 등의 제한) ① 법 제6
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
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
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
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
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
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무관
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
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
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
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
다.

③ 군수는 주무관청이 법 제65
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
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
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
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
제공) ① -----

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시 자료제공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한다.

1. (생략)
2.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 (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)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

- ② (생략)
- ③ (생략)
- ④ (생략)

제16조(공탁 등)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평창군(이하“군”이라 한다)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 다만, 군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.

- ② (생략)
- ③ (생략)

제18조(군세의 수납)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“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”란 납세고지서1매당 세액(가산금을 제외한다)이 30만원 이하인 군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----- 내의 경우에 한한다.-----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공탁 등) ① -----

----- 군 -----
-----.

<단서 삭제>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세무공무원의 수납) -----

세를 말한다.

제38조(배분방법) 압류재산의 매각금액,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국·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금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·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균세를 우선 징수한다.

3. ~ 8. (생략)

-----.

제38조(배분방법) -----

--- 각 호-----

-----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99조제1항 제3호-----

----- 영 제

86조 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.

3. ~ 8. (현행과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재무과장 장동기
연락처	(033) 330 - 2270

관계법령 발취

□ 국세기본법

제10조(서류 송달의 방법)

- ② 납세의 고지·독촉·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.
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.
-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
 1. 서류의 명칭
 2.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
 3. 송달 장소
 4. 발송연월일
 5. 서류의 주요 내용

□ 지방세기본법

제65조(관허사업의 제한)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

제72조(교부금전의 예탁)

-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, 납세자,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